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63
----------	-------

발의연월일 : 2026. 2. 4.

발 의 자 : 김미애 · 나경원 · 강승규
김소희 · 김기현 · 김선교
서명옥 · 김민전 · 조정훈
강선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 제14조에 따라 보장되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국민이 국외로 이동하거나 이주할 자유는 단순한 이동의 자유를 넘어 국가의 정책 실패나 통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자유에 해당함.

현행법은 출국의 자유 원칙에 대한 규정 없이 다만 출국금지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을 뿐임. 특히 공공의 안전 목적 및 범죄수사 목적의 출국금지의 경우,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출국금지의 대상을 정하고 있어 출국금지의 필요성과 명확성의 기준이 매우 낮게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법령의 구조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게 넓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짐.

이에 형사사법 절차의 실효성 확보 등 헌법상 정당성 및 필요성이 명백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그 근거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의 정책 실패, 경제 위기 또는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가 실패형 출국 봉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출국자유 원칙) ① 국민은 출국의 자유를 가지며, 국가는 재정악화, 외환·금융위기, 정치적 혼란 및 정책적 판단 등 일반적, 포괄적인 사유로 국민의 출국을 제한할 수 없다.

② 국민의 출국은 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준하는”을 “준하여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으로, “대한민국의”를 “구체적 사안에서 대한민국의”로,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을 “있는 것으로 객관적 근거에 따라 인정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를 “출국을 금지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다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 6. (생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u>준하는</u> 사람으로서 <u>대한민국의</u>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u>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u> 사람	제2조의2(출국자유 원칙) ① 국민은 출국의 자유를 가지며, 국가는 재정악화, 외환·금융위기, 정치적 혼란 및 정책적 판단 등 일반적, 포괄적인 사유로 국민의 출국을 제한할 수 없다. ② 국민의 출국은 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4조(출국의 금지) ①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 -----<u>준하여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u>----- <u>구체적 사안에서 대한민국의</u>-----<u>있는 것으로 객관적 근거에 따라 인정되는</u>-----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u>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u>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2. (생략) ③ ~ ⑤ (생략)	② ----- -----<u>출국을 금지하여야 할</u> <u>명백한 이유가 있다고</u>----- ----- -----. ----- ----- -----. 1.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